

과천도시공사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정 2020.02.05. 지침 제22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과천도시공사(이하 “공사” 라 한다)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발대상) 고발대상은 공사 소속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제3조(범죄보고 및 고발주체) ① 부서책임자와 감사담당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과 임직원이었던 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감사책임관을 통하여 이를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장 또는 감사책임관은 직무를 행함에 있어 소속 임직원의 범죄혐의사실을 발견 또는 보고받은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의 규정 및 이 지침에 의하여 이를 고발하여야 한다.

제4조(고발대상 및 결정) ① 고발대상은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를 포함한다.

② 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도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공금횡령·배임 등 직무와 관련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의 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발하여야 한다.

가. 200만원이상 금품, 향응 수수, 공금횡유용(공소시효내 누계금액을 말한다)

나. 200만원미만이라도 공금횡유용 금액을 전액 회복하지 않은 경우

다. 최근 3년 이내 금품향응수수, 공금횡유용,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수수 등을 한 경우

라. 인사,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2. 부당한 행정행위를 수반한 범죄를 저질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이익을 가져다 준 경우
3. 범죄내용의 과급개연성이 크고 수사 시 비위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를 행한 경우
5. 직무상 지득한 비밀 중 중요사항을 누설한 경우
6. 법령과 규정을 악용하였음이 명백하여 공직 내외에 중대한 물의를 야기한 경우
7. 기타 범죄의 횡수,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고발 시기 및 절차) ①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한 즉시 고발함을 원칙으로 한다. “사실을 확인한 즉시”라 함은 횡령혐의자가 횡령사실 및 횡령 금액 등에 대하여 시인한 경우를 말한다.

②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경우에는 조사결과 증빙자료에 의하여 횡령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심의를 거쳐 고발한다.

③ 고발은 사장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되, 범죄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고발처리상황의 관리 및 보고) ① 감사책임관은 고발한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범죄혐의사실의 요지 및 고발을 아니하는 사유를 사장의 결재를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감사책임관은 제3조에 의한 보고 및 고발사항과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사항을 즉시 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고발대상사건 목인에 대한 책임) 사장은 범죄행위의 보고 및 고발의무가 있는 자가 고발대상 범죄행위를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고발하지 아니하고 이를 목인한 때에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태만히 한 것으로 보아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사 설립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전에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공직자 고발처리 상황부 (제6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건명 및 범죄 혐의 요지	피 고 발 자			고발 일시	고발장 접 수 기관명	수사개시 진행상황 등 공소제기 상정	기타참고 사항 (고발유예 사유 등)
		소 속	직급 (직위)	성 명				